

● 공정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43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분석·공개···“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지원에 대한 감시강화 차원에서 10월에 43개 민간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 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이 집단·회사별로 분석, 공개한다고 언급하고,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협의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는 공시토록 대기업 집단의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인지 계약방식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MRO와 SI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및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관련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주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10월에 하도급계약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1월에는 부당단가인하 및 기술탈취가 용이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분야에서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반품 및 감액 등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분야의 경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내에 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진입규제 외에 사업활동 규제, 가격 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를 면밀히 실시하는 한편,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통신·금융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에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정보·경비 등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담합 억지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에 '이-러닝' 사업자의 이용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를 조사·시정하고, 11월에는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해 법위반 행위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불공정 약관을 고치려는 공정위의 노력도 계속된다. 10월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홈쇼핑·포털 등의 약관을, 11월에는 해지 제한·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헬스클럽분야 불공정약관을 고치며, 12월에는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조항을 신설하는 등 렌터카의 표준약관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11월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는 상조업체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고, 12월에는 다단계 업체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 5년내 별점누계가 5점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5년내 다시 입찰담합하면 공공부문 입찰 참가 어려워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반복해 입찰담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해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요건을 하향조정(과거 3년, 별점누계 5점 초과 → 과거 5년, 별점누계 5점 초과)해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상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별점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을 하도록 했다.

현행 지침은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별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해야 한다. 개정 후에는 과거 5년 내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를 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9월 21일 현재, 17개 사업자(5점 초과)가 다시 입찰담합을 할 경우에 입찰참가제한조치 적용대상이고, 계속 누적적으로 제한조치 적용대상 사업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담합방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 1주년 맞아 추진방안 수립

법·제도적 기반 충실히 마련···실질적 동반성장 위해 '부당 단가인하 개선' 주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1년 동안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동반성장 문화 확산 △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그동안 마련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 동반성장 협약 확산 △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년 간의 중점 추진내용으로 △ 하도급 관련 법령의 대폭 개선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평가·지원시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하도급법령 및 조직 정비 △ 시행령·지침 등 하위규정 정비 및 차질 없는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기업협력국에 1개과를 신설하는 등 총 17명으로 증원해 개정된 하도급 법의 충실한 집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구두발주와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 및 2차 협력사 이하 거래 집중 점검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체결을 확대하고 평가기준 개선 △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 합의한 6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실태파악 및 점검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3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3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개선에 법집행 역량 집중 △ 동반성장효과가 2차 협력사 이하에게도 전달되도록 각 거래단계별 불공정행위 적발 시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부당 단가인하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는데, 감액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을 감안해 위법한 감액에 대해서는 엄정한 직권조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적인 구두발주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상습성을 감안하여 직권조사를 강화하거나 CEO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바람직한 서면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해 선진적 계약·서면교부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탈취행위의 엄정 대처를 위해서도 직권 조사를 통해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의무 이행실태를 10월 하순 이후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SW 분야 등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동반성장협약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공생발전문화가 우리 경제 전반에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협약제도도 보완하기 위해 △ 동반성장 저변 확대를 위해 재협약·신규 협약 체결이 가능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확대(상시) △ 동반성장지수 대상 56개 대기업의 차질 없는 협약 이행을 위해 현재 중간점검 △ 동반성장협약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서는 10월 중 판매수수료 인하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수수료 실태분석 등 실시하며, 주요 명품의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 분석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판매수수료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2011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43개 민간대기업집단 대상·대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 대상 매출액 비중 12.0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 현황(내부거래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해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및 공정위 제출 자료(공정거래법 제13조)를 분석한 것으로, 분석대상 집단은 2011년 4월 5일 지정된 47개 민간대기업집단 중에서 신규 지정된 대우건설, 대성, 유진, 태광 등 4개 집단을 제외한 43개 민간 대기업집단이다.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 1201.5조 원 중에서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144.7조원의 비중(내부거래비중)은 12.04%에 달했다.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집단은 STX(23.49%), 현대자동차(21.05%), OCI(20.94%) 순이었다.

2009년 이후 연속지정집단 39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2.11%로 전년 12.30%보다 0.19%p 감소했다. 상기 내부거래비중은 회사 및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수출액 등 요인 반영 시에는 내부거래비중은 △ 수출액을 제외한 상위 10대 집단(총수 있는 경우)의 내부거래비중은 27.86%로 수출액을 포함했을 때(13.23%)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275개사)의 내부거래비중은 모회사에 대한 매출을 제외할 경우 12.92%p 감소(27.63% → 14.71%) △ 사회적 기업인 포스코하우징, 포스플레이트, 송도에스이(포스코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은 각각 95.16%, 100%, 99.80%에 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9월 27일 선정한 16개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중에서 2010년 말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매출이 존재하는 품목은 9개로 내부거래비중은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지정 품목이 대부분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의 주요 특징으로는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는 집단내 주력 계열사에 수직계열화된 회사나 수직계열화된 회사는 특정 계열사에 대해서만 매출이 발생하며, 거래회사 간 업종이 같거나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영위회사는 집단내 다수 계열사에 대해 매출이 발생하고 거래회사간 업종 연관성은 없었지만, 총수일가지분 및 계열회사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총수일가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회사(144개사) 내부거래비중은 17.90%로 30% 미만인 계열회사(831개사) 12.06%보다 5.84%p 높은 수준이었으며, 계열회사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682개사)들의 내부거래비중은 19.60%로 50% 미만인 계열회사(401개사) 9.99%보다 9.61%p 높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았고 총수일가지분율이 높은 회사(30% 이상) 중에서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30% 이상)는 주로 사업서비스업 영위회사이거나 부동산업, 도매 및 상품증개업(유통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상기 업종 영위회사는 총수일가지분이 없는 (작은) 경우에도 높은 내부거래비중을 보였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시스템 통합관리와 같은 일부 업종은 총수일가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범위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결합의 사전신고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 확대에 있어서 △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범위(대상규모, 대상기업) 확대 △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 △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그리고 기업집단내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범위를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상장사의 경우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의 10% 이상 혹은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의 사전신고범위 확대에 있어서는 주식취득방식을 통한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심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습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한근거를 마련했는데,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습 범위반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약용할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기계·화학 분야 특허권 남용행위 실태조사 실시

국내외 31개 기업 대상·특허 라이선스 계약 및 분쟁 합의 심층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9일, 기계·화학 분야 전반에 걸쳐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 확산을 반영해 2010년 실시한 제약 및 IT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 개시하게 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공정위는 2010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면 개정을 통해 법집행 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특허권 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계·화학 분야는 전기통신 분야 다음으로 특허 출원·등록 및 권리분쟁 건수가 많아 특허권 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약과 IT 분야에 이어 후속 실태조사 대상 분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기계·화학업종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 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이들 업체는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운송장비, 일반 목적용·특수 목적용 기계 등을 제조하는 주요 기계·화학 기업으로서, 관련 분야의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했거나 국내 특허분쟁 건수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13개 화학업체는 국내 8개과 다국적 5개, 18개 기계업체는 국내 9개와 다국적 9개가 선정됐다.

조사내용으로는 최근 특허분쟁 및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스 및 크로스 라이선스(상호실시허락) 계약 거절 사례,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세부 거래조건 등을 파악하게 되며, 시장 진입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특허분쟁 합의,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조항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포착 할 수도 있다.

조사표를 바탕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시 현장조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서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0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개월간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혐의가 확인될 경우는 추가 조사를 진행해 법위반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관련 산업분야의 합리적 거래관행으로 인정되는 계약조항 등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향후 지식재산권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중소납품업체 실태조사 결과, 판매수수료만 평균 31.8% 부담

판촉인건비로 연간 4억1000만원, 인테리어비로 1억2000만원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현대·신세계 등 3대 백화점에 납품(입점)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상위 3사 백화점에 납품(입점)한 중소업체 73개사를 대상으로, 백화점의 대표적인 상품군인 의류, 생활잡화 등 15개 품목에 걸쳐 실시됐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소납품업체들은 1개 백화점에 대해 판매수수료로 평균 31.8%를 부담하고,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로 업체당 1개 백화점에 대해 각각 평균 4억1,000만 원/년, 1억 2,000만 원/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거래형태는 거의 대부분 ‘특정매입’이며, 계약기간은 1년 단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매입형태의 거래에서는 백화점이 통상적으로 관리비를 부담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관리비 부담문제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류 및 생활잡화 상품군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31.8% 수준이었다. 세부 품목별 평균 수수료율(단순 평균)은 대부분 30% 이상이었고, 셔츠/넥타이가 37.0%, 유아동의류 36.7%, 남성정장 34.0%, 여성정장 33.8%, 여성캐주얼 33.7% 순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세부 품목별 최고 수수료율은 대부분 35% 이상이었고, 잡화 40%, 셔츠·넥타이, 생활용품 및 가구·인테리어 등이 3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 품목별 판매수수료율 현황 (2010년 계약서 기준) 〉

품목	평균 수수료율(%)	수수료율 범위(%)	품목	평균 수수료율(%)	수수료율 범위(%)
남성정장	34.0	30.0~37.0	욕실/위생용품	33.3	31.0~36.0
남성캐주얼	30.7	27.0~35.0	생활용품	33.2	31.0~38.0
여성정장	33.8	26.0~37.0	주방용품	29.4	22.0~35.0
여성캐주얼	33.7	26.0~36.5	가구/인테리어	28.4	21.0~38.0
셔츠/넥타이	37.0	33.0~38.0	잡화	31.4	10.0~40.0
란제리/모피	21.5	14.0~26.0	보석/액세서리	28.9	23.0~34.0
유아동의류	36.7	35.0~37.0	화장품	32.0	30.0~33.0
진/유니섹스	30.0	30.0			

납품업체가 백화점 납품(입점)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판매촉진비용 등으로 다양했으며, 납품업체 대부분은 제1순위로 부담스러운 추가비용으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지적했고 이어서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납품업체는 계약상 휴일 기준(고객이 많은 날 기준)으로 책정된 3~5인(단기 행사시 인원 추가)의 판촉사원을 백화점 각 지점에 의무적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은 1개 백화점에 대해 업체당 연간 평균 4억 1,000만 원(업체 별 1개 백화점에서의 연간 평균 매출액 40억 원의 10% 수준)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가장 많이 부담한 경우를 보면 가구/인테리어는 입점 백화점 연간 매출액의 34.5%, 잡화는 32.4%, 욕실/위생용품은 27.1%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인테리어비는 1개 백화점에 대해 업체당 연간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8억 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평균 1억 2,000만 원(업체별 1개 백화점에서의 연간 평균 매출액 22억 원의 5% 수준)으로 조사됐는데, 매장 이동이 통상 계약기간 1년 이내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 이후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납품업체는 이에 따른 인테리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는 백화점의 세일 또는 행사시 판촉비를 부담하고 백화점의 각종 요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할 콘서트 티켓, 과일바구니, 와인, 자사 제품 등을 백화점에 제공하고, 일부 납품업체는 상품권 구매, 가매출 요청 등에도 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 중소납품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31.8%이고 많은 품목에서 최고 수수료율이 3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납품업체들은 백화점에 대한 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의 추가부담을 애로사항이라고 순차적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 → 이익 감소 → 상품 개발 등 투자 위축 → 제품 품질 개선 곤란 → 판매 부진 → 수수료 및 추가 부담 상승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에 걸쳐 2.7%p 인상됨에 따라 중소납품업체의 이익이 4.5%p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마트 및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명브랜드업체, 해외명품업체, 중소납품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법위반협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 201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지주회사는 일반 92개, 금융 13개 등 총 105개사로 전년 대비 9개사 순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9월 30일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말 현재 지주회사는 일반 92개, 금융 13개 등 총 105개사로 전년도 96개사(일반 84개, 금융 12개)보다 9개사가 순증했다. 2010년 10월~2011년 9월 기간 중 24개사(일반 20개, 금융 4개)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반면, 15개사(일반 12개, 금융 3개)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지주회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08년 9월(증가율 50%)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20개 집단 26개사로 전년도 17개 집단 22개사 대비 4개사가 순증했지만, 순증한 회사 모두 비주력회사로 주력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대기업집단은 없었다.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1조 9,28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반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9,161억 원이고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9조 171억 원이었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0.0%로서 법상 규제수준인 20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금융지주회사 모두 자·손자회사 지분율이 법률상 요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72.7%(상장 41.9%, 비상장 82.1%), 손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76.3%(상장 49.1%, 비상장 78.0%)이었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89.9%(상장 45.1%, 비상장 93.8%), 손자회사 지분율은 평균 80.8%(상장 61.3%, 비상장 81.3%)이었다.

일반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율과 동일인 일가 지분율(친족 지분 포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 동일인 지분율은 평균 34.1%(상장 26.0%, 비상장 42.8%),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평균 53.0%(상장 46.1%, 비상장 68.0%) 수준이었다. 한편,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11개사의 경우는 동일인 지분율은 평균 24%,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평균 40.9% 이었으며, 전년 대비 동일인 지분율(21.9%)과 동일인 일가 지분율(40.2%)은 다소 증가했다.

일반 5.5개, 금융 5.8개의 평균 자회사 수는 과거 추세와 유사했지만 일반 5.3개, 금융 5.7개인 평균 손자회사 수는 다소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는 손자회사가 많은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금융지주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증가로 평균 손자회사의 수가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 계열사의 지주회사내 편입율은 평균 71.0%로 최근 3개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대기업집단 소속 11개 지주회사의 편입율은 평균 76.8%로서 일반지주회사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지주회사 등은 금융사를 보유한 13개 지주회사 등 총 87개사로, 이 중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회사는 11개사이며, 47개사는 2012년 중에, 29개사는 2013년 중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 마련

국회는 10월 28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동 법은 공포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외에도, 매출 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대형유통업체에 지움으로써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반품, 감액 등 행위를 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과징금의 상한이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조정(관련 매출액의 2% →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내)되어 중소납품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별지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4개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안 마련 단계부터 최종 국회 의결단계까지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실효적인 법률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안 제정 전문가 TF팀을 운영하는 등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 담회·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관계부처 및 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업체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중소납품업체 등 업태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박선숙 의원실 주최 공청회와 정무위원회 공청회 등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해 법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률의 국회 통과로 여·야 합의에 의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5만 여 납품(입점)업체들이 불공정한 거래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으며,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발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201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 공개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8.5%···도입 의무화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비율 높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인 이사, 사외이사, 이사회내 위원회 및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제도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개정보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및 공정위 제출 자료(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를 분석한 것으로, 분석대상 집단은 2011년 4월 5일 지정된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중에서 신규 지정된 4개 집단(대성, 태광, 유진, 대우건설)을 제외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이었다.

〈 분석대상 집단 현황 〉

구분	집단명	계열사 수	상장사 수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35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현대중공업, 지 에스, 한진,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에스티엑스, 엘에 스, 씨제이, 신세계, 동부, 현대, 대림, 부영, 케이씨씨, 동국제강, 효성, 오씨아이, 현대백화점, 한진중공업, 웅 진, 코오롱, 영풍, 현대산업개발, 대한전선, 동양, 미래에 셋, 하이트진로, 세아, 한국투자금융	1,160	199 (비금융 181, 금융 18)
동일인이 법인인 민간기업집단(8개)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에쓰-오일, 한 국지엠, 흄플러스, 케이티엔지	135	19
계		1,295	218

총수일가의 이사등재(총수 있는 집단 소속 상장·비상장사 분석) 비율은 8.5%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전년도 9%보다 감소했는데, 상장회사의 이사등재 비율이 비상장사보다 높고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체 이사 4,913명 중 총수 일가인 이사 418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전년(9%)보다 0.5%p 감소했는데, 상장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비상장사보다 3.9%p 높았다. 기업집단 별 현황을 보면 세아, 부영, 한진 순으로 이사등재 비율이 높으며 삼성, 엘지, 대한전선 순으로 낮았으며, 총수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160개사 중 308개사로 26.6%이며, 상장사가 비상장사보다 높았다. 이사등재 비율 감소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 수가 75개로 증가해 전체 이사 수가 177명으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사외이사 및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기업집단 소속 상장사만 분석)를 살펴보면, 총수 없는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보다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이사회 참석률도 높았으며, 도입이 의무화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는 설치비율이 높지만, 도입 여부가 기업 자율인 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는 저조했다.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중은 47.5%로 전년 46.3%보다 1.2%p 증가했고, 법상 요구기준을 상회해 선임된 사외이사 수는 53명(평균 0.2명)으로 전년 51명(평균 0.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집단별 현황을 보면 총수 있는 집단 중에서 한국투자금융(66.7%), 금호아시아나(59.5%), 동부(56.4%) 순으로 높고 세아(28.57%), 코오롱·웅진(34.2%) 순으로 낮았으며,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87.8%로 전년 86.6%보다 1.2%p 증가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 회사 218개사 중 103개사(47.2%)로 전년도 99개사보다 4개사가 증가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66.4%(전체 위원 318명 중 211명)로 법상 요건인 50%(1/2)보다 16.4%p 높았다. 감사위원회는 전체 회사 218개사 중 133개사(61.0%)로 전년도 123개사보다 10개사가 증가했으며,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 비중은 94.1%(전체 위원 303명 중 285명)로 법상 요건인 66.6%(2/3)보다 27.5%p 높았다. 보상위원회도 전체 회사 218개사 중 28개사(12.8%)로 전년 21개사보다 7개사가 증가했으며, 보상위원 중 사외이사 비중은 76.5%(전체 위원 98명 중 75명)로 총수 있는 집단이 76.1%로 총수 없는 집단 77.4%보다 낮았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체 회사 218개사 중 23개사(10.6%)로 전년 19개사보다 4개사가 증가했으며, 내부거래위원 중 사외이사 비중은 89.5%(위원 95명 중 85명)로 총수 있는 집단 89.3%로 총수 없는 집단 90.9%보다 낮았다.

총수 등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감시하는 장치들을 제도적으로는 도입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 79개사의 직전사업년도(2010년) 이사회 운영현황을 보면, 이사회 상정 안건 2,020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해, 높은 사외이사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있는지는 의문시 되고 있으며, 도입 여부가 기업 자율인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는 설치비율이 너무 낮아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방지 및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분석 결과, 사외이사 비중은 증가했지만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은 감소해 제도 도입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중의 확대와 법상 설치의무가 없는 일부 회사들의 자율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총수일가의 이사등재나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은 여전히 저조하고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약화시키는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을 좌우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내부 감시장치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성과 함께 책임경영이나 투명경영 제고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 및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현행 대기업집단현황 공시자료만으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외이사의 역할 등 운영 실태를 분석에 포함해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고시 또는 운영매뉴얼)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주식소유현황, 내부거래현황 등과 연계 실시함으로써 분석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추진

업종 관련성 없는 M&A는 2주내 신속 처리·M&A 심사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실질 보완

공정거래위원회는 M&A 심사시 업종 관련성 없는 M&A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한편, 경쟁제한성 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엄격히 보완함으로써 경쟁제한적 M&A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보다 완벽히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업종간 관련성이 없는 M&A의 간이심사 대상 편입이다.

M&A의 양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경우는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고,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될 경우는 신고 후 14일 이내에 처리됨에 따라 기업 측의 심사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해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보완했는데, M&A를 통해 상대회사를 지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관계의 인정범위를 확대(공동의 지배관계 인정)했다. M&A의 경쟁제한효과 중 하나인 부당 공동행위의 발생 가능성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소수 지분 취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를 신설했다.

또한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Buying Power) 증대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도 명시했다.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별도의 장(章)으로 편성하고, 판단요건도 보완했는데, 현재 수평결합(동종 업종간 결합) 판단기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독립된 장으로 편성해 비수평결합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기타 '신규 진입 가능성' 및 '강력한 구매자' 등의 구체적인 판단요건도 보완했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심사부담이 완화되어 기업의 구조조정 및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한 M&A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금년 내 의견 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광고·SI·물류 업종 실태조사 결과, 역할 없이 '통행세' 징수 사례도 확인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88%가 수의계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시스템통합)·물류업체 실태조사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기준 상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광고 8개, SI 8개, 물류 4개 등 20개 업체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선정 방식 등의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2010년 매출액 총 12.9조 원 중 71%인 9.2조 원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으로, 2008년 69%와 2009년 67%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에 있어서는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광고 69%, SI 64%의 순이었다.

광고 분야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비중은 총매출액 1조 319억 원 중 69%인 9,066억 원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대행사들은 계열사 광고를 거의 전속적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4대 기업집단 광고대행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68%이며, 개별기업별로는 55~80% 수준이었다.

SI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7조 90억 원 중 64%로, SI 분야는 공공분야 및 금융권의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해 내부거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4대 기업집단 소속 SI사 내부거래 비중도 64% 수준이었다.

물류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4조 5,512억 원 중 3조 7,748억 원으로 83%수준이며, 광고·SI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모회사에서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설립되어 완전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9조 1,620억 원 중 88%인 8조 846억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비중은 12%인 1조 774억 원에 불과했으며, 업종별로는 물류 및 광고 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9%, 96%로 매우 높고, SI분야는 수의계약 비중이 78%로 나타났다.

비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3조 7,177억 원 중 41%인 1조 5,211억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경쟁입찰 비중은 59%인 2조 1,966억 원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12%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경쟁입찰을 상대적으로 크게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거래 및 비계열사 거래를 종합해보면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거래액 총 12조 8,796억 원 중 75%인 9조 6,057억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

다. 분석대상 업체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71%로 높고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도 88%로 높기 때문에, 전체 거래액 중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물류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98%로 가장 높고, 광고 85%, SI 57% 순이었다.

수의계약 비중과 내부거래 비중간 관계를 살펴보면, 광고와 SI 분야의 2008년과 2010년 변화추이를 보면 수의계약 비중과 내부거래 비중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계열사간 거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업종별로 다시 살펴보면 광고 분야는 8개 광고대행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9,066억 원 중 96%인 8,668억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4,128억 원 중 63%인 2,587억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SI분야는 8개 SI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4조 481억 원 중 78%인 3조 4,951억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2조 5,284억 원 중 21%인 5,238억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물류분야는 4개 물류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3조 7,748억 원 중 99%인 3조 7,226억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7,764억 원 중 95%인 7,387억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대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 업체는 전체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세부 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총괄 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즉,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하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소위 ‘통행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했는데, 다만 기업비밀 보호, 긴급한 사업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수의계약 관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Captive Market)이 형성되고,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SI 업체 등의 입장에서도 계열사 물량에 안주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발주사 입장에서도 다른 역량 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경쟁압력(Competitive Pressure)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수의계약 관행이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등이 공시되도록 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동 시행령 개정 완료 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도 공시되도록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011년 9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8월보다 5개 회사 증가해 1605개

2011년 10월 1일 현재 55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605개로 지난달 1,600개에 비해 편입 13개, 제외 8개 등 5개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9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1. 9. 1.	편 입				제 외				2011. 10.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기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55개)	1,600	5	5	3	13	3	1	3	1	8	5	1,605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8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총 13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 회사 설립 5개 {삼성 : 에스유머티리얼스(주) / 에스케이 : 스피드모터스(주) 등} △ 지분 취득 5개 {에스케이 : 엘씨엔씨(주) / 동부 : 대농종묘(주) 등} △ 기타 3개 {포스코 : 계일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 케이티앤지 : 로제화장품(주) 등이다.

제외내역을 살펴보면 8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등으로 총 8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합병 3개 {엘에스 : (주)오디캠프 / 동양 : 동양매직(주) 등} △ 지분매각 1개 {삼성 : (주)씨에스엘} △ 청산종결 3개 {하이닉스 : (주)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 등} △ 기타 1개 {세아 : (주)호연관광레저산업} 등이다.

● 2011년 10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9월에 비해 13개 회사 증가한 1618개

2011년 11월 1일 현재, 55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618개로 지난달 1,605개에 비해 편입 22개, 제외 9개 등 13개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0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1. 10. 1.	편 입				제 외				2011. 11.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기타	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55개)	1,605	10	3	9	22	6	1	2	9	13	1,618

2011년 4월 5일 지정 이후 소속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총 64개가 증가했다.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9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으로 22개 증가했다. △ 회사 설립 10개 {에스케이 : 에스케이플래닛(주) / 롯데 : 롯데나뚜루(주) 등} △ 지분 취득 11개 {신세계 : 톰보이(주) / 금호아시아나 : 대한항만운영(주) 등} △ 기타 1개 {케이티 : 코에프씨케이티씨오릭스한일부품소재상생2호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다. 케이티에서 비씨카드(주)를 인수하면서 비씨카드(주)의 계열회사인 (주)에이치엔씨네트워크 등 7개 회사가 케이티에 동반 편입됐다.

제외내역으로는 6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으로 9개가 감소했다. △ 흡수합병 6개 {롯데 : 롯데제약(주) / 한화 : 푸르덴셜자산운용(주) 등} △ 지분매각 1개 {에스케이 : 엔비제이게임즈(주)} △ 기타 2개 {포스코 : (주)유영금속} 등이다.

● 공정위 인사 동향 (2011. 9. 11. ~ 11. 9.)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권해정

복직을 명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김정훈

일본, 츄오대학교 파견기간 연장을 명함
(파견연장기간: 2011.9.15.~2013.3.14.).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행정사무관 이종선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 2011.9.19.~2012.9.18.).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행정주사 김종인

고용노동부 전출을 명함.

▶ 고용노동부 행정주사 설민아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김석원

한시계약직공무원 7호에 임함.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계약기간: 2011.9.19.~2012.8.31.).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기능8급 운전원 서인수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2011.9.19.~2012.6.30.).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성삼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장에 보함.

▶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장 서기관 신동열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에 보함.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서기관 오동욱

▶ 행정사무관 유영욱

▶ 행정사무관 박주한

▶ 행정사무관 안남신

▶ 행정사무관 김유진

▶ 행정주사 김종완

▶ 행정주사 이진열

▶ 행정주사 김홍직

▶ 행정서기 이영미

▶ 기능8급(사무실무원) 흥계영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임선정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근무를 명함.

▶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서기관 설춘호

▶ 행정사무관 심재무

▶ 토목사무관 지윤구

▶ 행정사무관 오명석

▶ 행정사무관 유혜경

▶ 행정주사 정영운

▶ 행정주사보 노현재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심재식

▶ 행정주사 류호형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2011.9.21.~별도발령시까지).

▶ 23.

▶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성삼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에 보함.

▶ 대통령실 부이사관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 과장에 보함.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장 서기관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근무

를 명함(기간: 2011.9.23.~2012.3.31.).

▶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서기관 박인규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2011.9.23.~별도발령시까지).

▶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서기관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정창욱

파견복귀를 명함.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에 보함.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인민호

기업협력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에 보함.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서기관 김대영

공정위 소식

-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장에 보함.
-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서기관 박종배**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성찬**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사무관 이규석
- ▶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유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행정사무관 이정호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행정주사 조석진**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류호형**
- ▶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행정주사보 노현재**
기업협력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근무를 명함.
- ▶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토목사무관 지원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상욱**
행정사무관에 임함.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철웅**
행정사무관에 임함.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배지영**
행정사무관에 임함.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안광현**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9.23.~별도발령시까지).
- ▶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행정주사보 한대호**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근무를 명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토목사무관 염철호**
- ▶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행정주사 김홍직**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근무를 명함.

9.29.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이경만**
대통령실 전출을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상협**
일본, Nomura Securities Co. Ltd. 파견기간 연장을 명함(파견연장기간:2011.9.30.~2012.9.29.).

9.30.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서기 한정희**
서울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그 직을 면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서기 박명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서울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그 직을 면함.

▶ **서울시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박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행정서기에 임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서울시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최정민**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행정서기에 임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9.30.~별도발령시까지).

10.1.

▶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 김신영**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배현정**

파견복귀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손계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무총리실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11.10.1.~2012.9.30.).

10.6.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김진용**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10.6.~별도발령시까지).

10.7.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서기관 황윤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근무를 명함.

10.12.

▶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행정사무관 안병규**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신정은**

▶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한경종**

서기관에 임함.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사무관 김백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에 보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안광현**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윤기**

행정사무관에 임함.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10.12.~별도발령시까지).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행정사무관 김진석**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겸임을 해제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사무관 우명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함운용**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근무를 명함.

- ▶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이창욱**
-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행정주사보 조영미**
- ▶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행정주사보 박무승**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주사보 김형일**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보 신동빈**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보 강치중**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보 문창식**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행정주사보 조상훈**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행정주사보 손홍대**
행정주사에 임함.

- ▶ **공정거래위원회 전산사무관 이다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출을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한정현**
복직을 명함.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2011.10.20. ~ 별도발령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신동열**
대통령실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2011.10.21. ~ 2012.9.20.).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김진용**
공무원임용령 제48조 및 2011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거
중소기업청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2011.10.24. ~ 2012.10.23.).

- ▶ **중소기업청 행정주사 김장권**
공무원임용령 제48조 및 2011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
소 건설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기간: 2011.10.24. ~ 2012.10.23.).

▶ **금융위원회 행정주사보 김경희**

공무원임용령 제48조 및 2011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
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기간: 2011.10.24. ~ 2012.10.23.).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채진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2011.10.24. ~ 별도발령시까지).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보 손민경**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8조 및
2011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거 금융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기간: 2011.10.24. ~ 2012.10.23.).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기능9급(사무원) 권애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2011.10.24. ~ 별도발령시까지).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 **자치경제부 행정사무관 권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
과 근무를 명함.

▶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행정주사 박가연**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 2011.10.28. ~ 2012.10.27.).

▶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행정주사 박진홍**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그 직을 면함.

▶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주사 이동영**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행정주사에 임
함.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조연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그 직을 면함.

▶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주사 문주택**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행정주사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근무를 명함.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김성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
과 근무를 명함.

▶ 법제처 행정사무관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기업협력국 건설용역하고
급개선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정신기

복직을 명함.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이상명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행정사무관 안효선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행정사무관 심재무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2011.11.1. ~ 2011.11.11. 까지).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심재식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기업
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 근무를 명함.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표순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행정사무관 박희순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행정사무관 강진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에 보함. 대전지방공정
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기간: 2011.11.1. ~ 별도발령시까지).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 행정사무관 이상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겸임을 해제함. 대전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에 보함.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행정사무관 김현철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에 보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문창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경상북도 지방행정주사보 장유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행정주사보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카르텔조사국 카르텔
총괄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2011.11.1. ~ 별도발령시까지).

▶ 방위사업청 행정주사보 최병근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
과 근무를 명함.

▶ 조달청 행정주사보 송길용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
과 근무를 명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정윤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행정주사보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근무를 명함.

▶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 행정주사보 배민경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행정주사보 민지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지원근무를 해제
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행정주사보 한대호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 전출을 명함.

11.2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행정사무관 문종숙

기업협력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2011.11.2. ~ 별도발령시까지).

11.7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주사 박진성

교육과학기술부 전출을 명함.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주사 박리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윤은정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 2011.11.7. ~ 2013.11.6.).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보 김은영

방송통신위원회 전출을 명함.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주사보 김치중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보 이정희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보 이관형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11.9

▶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정민식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근무를 명함.